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를 폐지하고, 관련 회칙을 모두 삭제한다] 에 관한 총투표 이의제기서

11월 1일, 총투표 관련 회칙이 개정되었다. 전면개정으로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개정을 통해 제 2장 학생총회의 항으로 추가되었다. 이후 <총여학생회 폐지>에 관한 총투표 서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회칙 개정과 동시다발적으로 서명이 시작되었고, 2주만에 500명 이상의 정회원 서명이 제출되어 하루만에 투표 시행이 공고되었다.

11월 1일 부분개정된 회칙에서는 총투표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총대의원장(이자 중선관위장)은 총대의원회에서 주관한 대토론회에서 총투표는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고 했다.

선거시행세칙은 총투표와 일절 상관없이 대표자 선거의 맥락만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선거를 위한 세칙을 어떻게 총투표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세한 논의와 담당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총투표에서는 그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중앙위원회(중앙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의 적용과 비적용을 자의적으로 선택했다. 이외의 문제에 있어서도 본 투표는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시행 공고 부착 기간에 대한 문제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적어도 투표일 10일 전에 발의된 내용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위 및 중선관위는 시행 공고를 <총학생회칙> 학생총회 장을 수용하여 이를 4일 전, 페이스북으로 게시했다. 일반적으로 학생회의 공고 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즉, 중앙위 및 중선관위의 시행 공고는 당일을 제외하고 하루 공고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또한 공고문은 온라인으로만 게시되었다가 주말이 되어서야 오프라인으로 게시되었다. 실제로 투표 당일 현장에서 총투표가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우들이 있었다.

2. 논의 기간 미확보

중앙위 및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을 적용해 투표 당일 반대표 호소를 선거 운동으로 취급하여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투표 이전 '선거 운동 기한'은 주지 않았고 앞서 제시했듯 주말 포함 발의 4일 후 투표를 강행했다. 총대의원회는 사전에 총여학생회 측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진행되기 이전 총투표를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3. 총투표 발의 과정상 절차 무시

중앙위는 500명 이상의 발의자가 정회원인지 심의를 하지 않았다. 총대가 학교 측으로 서명인 명단을 보내 확인 작업을 요청했으나 중앙위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교 측으로부터 정회원 발의자 명단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기 전에 총투표 시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 후 실시를 공고했다. 더하여 총투표 마감 이후인 지금까지도 발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총여학생회는 '제 4조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본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학생활동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항할 권리를 갖는다'는 회칙을 바탕으로 여학생총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총회를 통해 총여학생회 폐지를 비회원이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총대와 중앙위, 중선관위는 여학생총회의 결정을 고려하라.

이에 다음의 총학생회원은 본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다음을 요구한다.

줄속으로 진행된 2018년 총투표를 전면 무효화하라